

(재)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263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2. 4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달성군 내 유희공간인 (구)다사치안센터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권역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
- 이에 문화도시센터 위탁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근거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감면)

3. 주요내용

- (재)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위탁시설 사용료 면제 동의 요청
 - 법인명 : (재)달성문화재단
 - 사용기간 : 2025. 2. ~ 2026. 2.(기간만료 후 재심의)
 - 위탁시설

재산의 표시				사용목적
소재지	구분	면적(m ²)		
다사읍 매곡리	719-19	토지(대지)	295	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(다사·하빈권역)
		건물	202.54	

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~ 3. (생략)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① ~ ④ (생략)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~ 2. (생략)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3. ~ 5. (생략)

⑥ ~ ⑦ (생략)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

제18조(위탁운영)

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·운영 사무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군이 출자·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 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③ (생략)